

## 7.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676호 1998. 2. 24

###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공급하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49호)됨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지구의 거주자를 거주기준이 3월 이상인 세입자로 정하고,

주택환경개선사업에 의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전매할 수 없는 기간을 국민주택은 입주가능일후 6월까지, 그외의 주택은 입주가능일후 60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 요 내 용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2호 및 동조제3항제1호 중 “제9조”를 각각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3월을 말한다.

④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당해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조례로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

일 후 6월까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 후 60일까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 부 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주택의 공급조건등(제8조관련)

구 분	내 용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방법	<p>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이하 당해 주택을 “분양주택”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구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지구의 거주자, 그외의 자의 순으로 분양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p> <p>나.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이하 당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구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자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3월이상 당해 지구 또는 다른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장기 임대주택에의 입주를 희망</p>

구 분	내 용
	<p>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당해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당해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른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순으로 공급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다. 주택을 영구임대하는 경우(이하 당해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p> <p>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3월이상 당해 지구 또는 다른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p>
3.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 방법	<p>가. 분양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p> <p>나. 장기임대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를 원칙으로 한다.</p> <p>다. 영구임대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p> <p>라. 세입자에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은 입주 대상자의 세대별구성원의 수, 당해 지구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구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p>
4. 공급절차등	<p>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절차, 공급신청, 계약조건 등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p>나. 장기임대주택 및 영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주택회보